

부산지방법원 2018. 3. 29 선고 2017가단3415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종교단체 B교회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3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D 임야 7697m² 중 769700분의 33057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89. 7. 31. 접수 제62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가 1999. 7. 28.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이규철